전자조달시스템특별입찰유의서

제정 2005. 6. 3 기준 제33호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단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협력업체"라 함은 협력단전자조달시스템조달협력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협력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협력단이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7.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 법령,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단, 입찰설명회가 있는 경우는 입찰설명회 전일까지)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 제17조에 따라 협력단에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 동규정 시행세칙,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협력단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취소의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협력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후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4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입찰서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도착된 시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각의 기준은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서 제시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산출내역서 등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의 경우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첨부파일의 하자)

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전자입찰의 개찰)

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4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제15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협력단에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시행세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입찰에서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시행세칙 제41조제4항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세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7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http://ebid.koica.go.kr)에 제공된다.

제18조 (기타사항)

①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약관,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협력단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3일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